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가. 제증명을 요청한 자에게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의뢰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나. 수수료 징수방법을 관련법령에 따라 조정하여 유사 사무에 대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다.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 업무가 경북도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석유판매업에 관련한 수수료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증명 등 수수료 환불금지 규정 개선

- 제증명 등 수수료의 환불금지 규정으로 민원인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수수료 환불금지 규정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나. 수수료의 감면 등 범위 확대

-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제증명 수수료 감면 규정 추가

다 법령개정 등에 따른 수수요율 변경 및 삭제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관한 사항 조정 (별표1)
- 병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삭제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삭제
- 부속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개설신고 20,000원 → 40,000원, 개설신고사항 변경 10,000원 → 20,000원

라. 개별법령개정에 따른 권한위임 (도지사 ⇒ 군수)

- 주유소·대체연료주유소 등록 20,000원/1건
- 일반판매소·용제판매소·대체연료 판매소 신고 10,000원/1건

4.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다.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 제1항

5. 검토의견

□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대한 규정사항을 조정하고, 수수료 반환 대상을 첫째, 과오납한 경우 둘째,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등록, 그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 본인이 철회한 경우 세째, 성주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증명 등 수수료의 환불규정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권한을 확대하고,

○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감면의 규정이 있는 경우 조례에서 삭제하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된 대상자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 감면근거를 정하는 것으로

○ 결론적으로 합리적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권리확보와 국가발전 및 민주사회 건설에 기여한 자에 대한 국가보훈의 적절한 혜택 그리고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권한위임 사항으로 상위법률의 근거로 적법한 조치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